

工產品 事後管理 指導 啓蒙 資料

I. 不法不良 製品 流通 團束 概況

1. 目 標

※ 不法不良工產品追防에 의한 國民生活 保護

- ① 國民生活의 安全 및 信賴性 圖謀
- ② 민고 사는 商去來 風土造成
- ③ 國產品에 對한 信賴性 提高

2. 規制 內容

區 分	品 目	規 制 內 容
事前 檢 查 商 品	102	出庫前 指定檢査機關의 檢査
事後 檢 查 商 品	31	出庫後 市販品 收去檢査
品質 表示 商 品	71	品質表示義務化 및 虛偽 表示禁止
電 氣 用 品	221	製造業許可 및 型式承認
K. S 表示許可商品	467	出庫後 市販品 收去檢査
K. S 表示命令商品	29	K. S 表示品 生産義務化
檢 定 計 量 器	29	出庫前 檢査機關의 檢定
非 檢 定 計 量 器	89(8)	
計	1,039(8)	() 중복숫자

3. 流通 團束 方法

規 制 法 令 區 分	方 法	處 罰 內 容

	品質表示	品質表示狀態 點檢	製造業體: 品質表示命令
		試料購入-試驗機關 └ 適正表示 (虛偽表示)	製造業體: 告發
電氣用品 安 全 管 理 法	電氣用品 團束	無許可 無承認製品	製造業體: 告發 및 수거파기 販賣商: 告發 및 수거파기
		試料購入-試驗機關 └ 基準適合 (基準未達)	製造業體: 承認取消, 告發, 출고정지改善, 警告等
工 業 標 準 化 法	K. S 表 示 品	試料購入-試驗機關 └ 基準適合 (基準未達)	製造業體: 許可取消, 表示停止, 販賣停止 注意警告等 表示除去
		K. S 命 令 品	製造業體: 告發 및 수거파기 販賣商: 수거파기-告發
		試料購入-試驗機關 基準適合 (基準未達)	製造業體: 許可取消, 表示停止, 販賣停止 注意警告, 수거파기等
計 量 法	計 量 器	不正計量器 및 不正計量行爲 團束	使用者: 告發, 使用停止, 파쇄, 修理指示等

4. 團束 方針

- 先啓蒙 後團束 -

가. 指導啓蒙의 強化

○ 流通業界 및 製造業體 事前啓蒙指導

○ 摘發된 業體의 教育實施

○ 常習的인 不良品 製造者 名單公開

나. 團束實旋

(1) 市·道合同團束(重點團束)

○ 團束班: 廳, 市, 道 合同으로 100개 班編成 運營

○ 對象品目: 50品目

○ 電氣다리미 ○ 燃炭가스排出器 ○ 電氣삼살

○ 電氣곤로 ○ 電氣남비 ○ 모발乾燥器 ○ 電氣후라이팬

○ 電氣주전자 ○ 電氣믹서 ○ 카세트라디오

○ 電壓調整器 ○ 電氣保温밥통 ○ 電氣장판 ○ 電氣요

○ 白熱電球 ○ 電氣藥탕기 ○ TV수상기

- 電動機(단상) ○扇風機 ○冷藏庫 ○玩具 ○페인트 ○保温容器

※ 團束 必要에 따라 調整

地 域 및 動員人員：100個 主要地域 및 周邊地域
200名 動員

(2) 自體團束：市, 道가 自體計劃에 의거 實施
(例)：廳의 自體團束計劃

○對象品目：合動團束除外品目 檢査不進品目 等200 品目

○團束地域：主要都市 및 周邊地域

○團束時期：年中常設 實施

※ 市道의 自體計劃을 紹介할 것

5. 團束結果 指導

○指導對象

- 不法, 不合格製品 製造業體
- 不法, 不合格 販賣業所

○指導機關：各 地方工業試驗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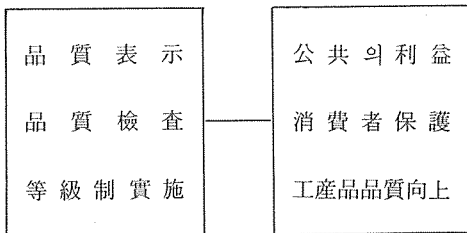
○指導內容

- 品質規制內容
- 優秀商品 選別要領 등

II. 品質規制法 內容

1. 工產品品質管理法

(1) 目的



2) 工產品 品質管理制度

가. 品質表示制度

○對 象：

- 一般消費者가 品質 識別이 困難한 品目으로 工業振興廳長이 指定한 品目

○表示基準

- 成分, 性能, 規格, 用途 等
- 表示方法 및 業所遵守事項

○制裁方法

- 表示命令：一定期間內에 表示命令 → 販賣 및 陳列禁止
- 虛偽表示禁止：品質內容과 相異한 過大標語 等

- 表示除去禁止：販賣業者의 表示除去 및 變更 等

나. 品質檢査制度

○對象：人命의 被害나 火災發生等 公共利益을 害할 憂慮가 있는 品目, 品質向上을 위 해 必要한 品目

○制度內容

- 事前檢査制度：出庫前檢査機關의 檢査를 받은後 合格된 製品에 合格을 附着 販賣 “表示의 例”：(검)
- 事後檢査制度：品目別 品質基準에 따라 製造後 販賣

○制裁方法

- 事前檢査：未檢査品目 및 不合格商品 流通 禁止
- 事後檢査：品質基準 未達製品 流通禁止

○事前檢査 및 事後檢査 品目指定 基準

事前 檢査	事後 檢査
○國民生活必需品	○品質識別이 困難한 品目
○安全危害品	○物動量이 많은 品目
○品質의 安全이 극히 必要한 品目	○不良品이 多少 包含되어 있어도 致命的인 損傷이 없는 品目
○物動量이 많지않는 品目	○低價品
○高價品	

다. 工場等級管理制度

○對 象

- 消費者保護를 위해 一定品質水準 維持가 要求되는 品目
- 基礎素材 및 部品으로 波及效果가 큰 品目

○等級査定

區 分	內 容
1 等級	品質管理狀態가 優秀한 工場
2 等級	品質管理狀態가 比較적 良好한 工場

○申請範次：省略

○等級工場의 特典

- 品質檢査免除 또는 檢査手數料 減免
- 認許可 要件의 適用 一部 排除
- 行政支援, 資料支援 干先

○等級의 表示

- 等級査定商品에 對해 該當等級 表示

공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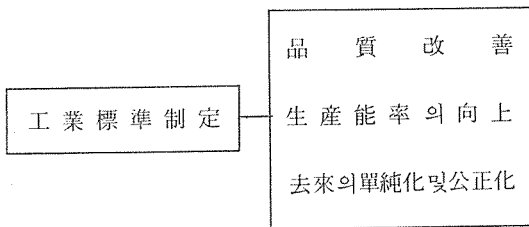
- 表示 : (품)

(3) 違反時 處罰內容

法條文	違反內容	罰則
第15條	○檢査指定商品으로 檢査未畢 및 不合格品의 販賣, 陳列行爲 ○破棄 또는 收去命令 違反	1年以下 懲役 또는 100萬圓 以下の 罰金
第16條	○品質表示命令 違反 ○表示除去 및 虛偽表示 禁止行爲 違反者	100萬圓 以下の 罰金
	○心要한 경우 規定에 의한 製造者 및 販賣者로 부터 報告義務 違反 ○必要한 경우 規定에 의한 製造者 및 販賣者 調査를 忌避妨害 또는 拒否者	50萬圓 以下の 罰金

2. 工業標準化法

(1) 目的



(2) 工業標準化制度

가. 韓國工業規格表示許可

○對象

- 工業振興廳長이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指定된 品目
- 工業振興廳長이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指定된 加工技術의 種目

○表示 許可 申請 節次: 省略

○表示品目의 特典

- 表示品의 優先購買: 國家, 地方自治團體, 政府投資機關 公共團體 等
- 檢査 또는 型式承認의 免除

工產品 品質管理法, 中小企業協同組合法, 電氣用品安全管理法, 에너지利用 合理化法에 의한 檢査 또는 型式承認

나. 韓國工業規格表示命令

○對象

- 人命의 被害나 火災發生등 公共의 利益을 害할 憂慮가 있는 鑛工業品 및 加工技術
- 消費者의 利益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鑛工業品 및 加工技術

○制度의 特性

- 表示命令이 있는 경우에는 韓國工業規格 (KS)을 表示하지 아니한 鑛工業製品은 製造 또는 販賣할 수 없다.

다. 統一單純化命令

○制度의 特性: 標準化 促進을 위하여 必要한 製品 部品 또는 素材의 使用, 規格統一 單純化를 위하여 種目 또는 規格을 指定

○命令을 할 수 있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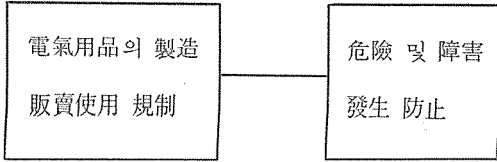
- 業種間 互換性의 擴大를 위해 單純化가 必要한 경우
- 物資節約을 위해 型式, 形狀등의 規格의 單純化가 必要한 경우
- 機械類 國產化促進 및 國際規格의 活用 促進을 위해 單純化가 必要한 경우
- 原價節減 또는 消費者 保護를 위해 單純化가 必要한 경우

(3) 違反時 處罰

法條文	違反內容	罰則
第24條	○表示無許可의 規格表示 및 加工技術 表示 ○表示命令品의 無許可 製造, 販賣 및 收去破棄 命令違反者 ○市販品調査 및 工場檢査結果 處分에 대한 違反	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圓 以下の 罰金
第25條	○文書를 虛偽作成 未備置 未報告 및 虛偽報告 ○必要時 檢査를 妨害拒否 또는 忌避者	50萬圓 以下の 罰金

3. 電氣用品安全管理法

(1) 目的



(2) 電氣用品安全管理制度

가. 電氣用品製造業許可

- 對 象：商工部令이 定하는 電氣用品을 製造하고자 하는 者
- 許可機關：市道知事
- 條 件：商工部令이 定하는 電氣用品區 分別 施設基準에 適合한 施設을 갖출 것.
- ※ 3月以內에 型式承認을 얻어야 한다.

○許可取消

- 申告 不履行 또는 虛偽申告
- 型式承認 없는 製品生産 등

나. 電氣用品의 型式承認

- 對 象：製造業者가 製造時 品質 및 安全 度 등에 대한 型式 區分別 承認을 얻어야 한다.
- 型式承認
 - 機關：工業振興廳長
 - 有効期間：3年
- 承認表示
 - ㉔, 型式承認番號, 製造者名 등

(3) 違反時 處罰

法條文	違反 內容	罰 則
32條條	○無許可無承認製品製造	2年以下의 懲 役 또는 100萬 圓 以下의 罰 金
	○必要時 檢査公務員의 檢査拒否 妨害忌避行 爲者	
第33條	○技術基準에 不適合 및 型式承認 條件違反	100萬圓 以下 的 罰金
	○試驗製造品 및 特定用 途使用品의 確認 없는 業體	
	○自體檢査未履行, 檢査 記錄作成 未保管 및 虛 偽記錄作成	
	○承認表示가 없는 製品 的 製造販賣 使用禁止	

	違反 ○改善命令違反	
第34條	○休業廢止, 事業재개 시, 申告義務 不履行 ○許可取消者의 許可證 返納 不履行 ○報告義務 不履行 및 虛 偽報告	30萬圓 以下의 罰金

공업진흥청장
1984년 3월

공업소유권 분쟁 중재업무 실시

한국발명특허협회 에서는 발명의 장려와 발명가 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공업소유권의 보호 및 분쟁 을 조정 중재함으로써 효율적인 발명진흥 사업수 행 및 공업소유권관리를 통한 국민경제성장에 기여 토록 공업소유권 분쟁중재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과 같이 업무를 실시하오니 관련업체에서는 적극신 청 활용하기 바란다.

한국발명특허협회장
1984년 3월15일

다 음

1. 업무내용

- 가. 공업소유권의 도용, 모방 등 침해예방과 해 결을 위한 자문 및 자료제공 등 보호에 관한 사항
- 나. 공업소유권의 허위표시자에 대하여 위법사 실통보 등에 의한 제지다.
- 다. 무모한 이의, 심판, 소송 등에 대한 분쟁의 화해 유도로 권리양수, 실시허여, 공유, 취하, 보상 등 조정중재에 의한 해결
- 라. 권리남용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계 도 및 방지대책강구

2. 취급대상

공업소유권보호 및 분쟁에 관한 모든 사항 (이의, 심판, 소송, 허위표시, 권리남용 사항 등)

3. 신청 또는 발급기간: 수 시

4. 신청서식: 생략

5. 처리절차

가. 상 답

- 1) 권리침해 등에 대한 보호와 분쟁예방을 위한 지도
- 2) 권리침해, 분쟁 등 당사자간의 공정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해결방안 모색
- 3) 권리보호및 분쟁조정 중 재방법 협의

나. 알 선

- 1) 권리침해, 분쟁 등에 대한 당사자간의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여 쌍방의 타협중계로 해결
- 2) 사건 관련기관 등에 보완자료 제출 등 업무협조
- 3) 공업소유권의 허위표시, 남용에 대한 해당 관련자 및 기관에 시정촉구 등 조치

다. 조 정

공업소유권 분쟁중 재위원회에 상정 심의조정

- 1) 사건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사항
- 2) 사건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3) 신청 당사자가 위원회 상정을 원하는 사항

라. 중 재

- 1) 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중재하여 쌍방의 합의로써 해결
- 2) 최종 해결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합의 계약서 작성 공증
- 3) 합의 해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사건을 종결

6. 위원구성

- 가. 위원장 : 본회 상근부회장
- 나. 위 원 : ○공과대학교수
○발명관계전문가

○변 리 사

○업 계 대 표

다. 간 사 : 본회사무국직원

첨 부 : 신청서 1부, 생략

국무총리지시사항 통보

제9회 국무회의시('84. 3. 8)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회원업체에서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.

상 공 부 장 관

1984년 3월19일

다 음

- 1.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
 -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.
 - 특히 도시의 파손된 도로를 신속히 보수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봄맞이 환경정비에도 힘쓸 것.
- 2. 도시녹화 중심의 식목행사
 - 아시아 경기대회를 2년 앞두고 도시녹화가 시급하므로 금년도 식목행사는 도시녹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.
 - 정부 부처에서는 자체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실천실시하고, 산하기관, 직장단위 및 가정에도 적극 참여토록 권장할 것.

